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121030 배당이의

원 고 A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2.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3.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3. 16.

판 결 선 고 2021. 3.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2.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9. 1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과천시에 대한 배당액 55,211,84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55,211,840원은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3. 원고의 피고 과천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과천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과천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9.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55,211,840원 및 442,128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12,679,395원, 피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4,866,922원을 각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의 배당액 0원을 73,200,28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채무자가 배당기일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redacted]법원 2016차전1017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8. 10. '원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212,236,283원 및 그 중 211,193,343원에 대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C은 2013. 10. 15.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6. 8. 31. 확정된 사실, ②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redacted]공사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86,781,015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2.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6타채226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redacted]공사에 2016. 10. 17. 송달된 사실, ③ [redacted]공사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17년 금 제1119호로 원고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 72,904,267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9. 11. 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위 공탁금에 대한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B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12,679,395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사실, ④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는바, 채무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원고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기술보증기금(변경전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제기할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되고,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부존재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거나 가압류결정 등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그 공탁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 2항), 가압류채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자가 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또는 배당순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고,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에 응소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취소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redacted]법원 2016차전7382호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6. 10. '원고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81,781,556원 및 그 중 81,091,296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2. 확정된 사실, ② 피고 기술보증기금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1. 7.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redacted]법원 2016카단203942호로 원고의 [redacted]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 기술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권자로서 4,866,922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④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기술보증기금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9.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은 피고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기술보증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과천시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redacted]시의 [redacted]시장은 2008. 10. 7. 원고에게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45,337,600원을 납부기간 2008. 10. 24.까지로 정하여 부과,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하였고,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은 2009. 9. 15.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3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2009과206호), 위 이행강제금 결정은 2010. 4. 6. 확정되었다.

3) 위 결정 후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4) 과천시장은 2016. 10. 18. 위 나머지 이행강제금 채권 10,000,000원에 기하여 원고의 [redacted]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고, 2016. 10. 20.경 원고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redacted]공사에 위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5) [redacted]시장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채권 합계 44,651,790원[2013년 9월 부과 재산세(토지) 20,080,060원 + 2013년 7월경 부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8,739,430원 + 2015년 9월경 부과 재산세(토지) 15,832,300원]에 기하여 원고의 [redacted]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그 무렵 원고 및 [redacted]공사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6) [redacted]시장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 채권 합계 66,261,130원[2013년 9월 부과 재산세(토지) 22,273,900원 + 2013년 7월경 부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9,471,550원 + 2015년 9월경 부과 재산세(토지) 18,045,580원 + 2015년 10월경 부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9,490원 + 2016년 9월경 부과 재산세(토지) 16,310,610원]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토지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였고, 그 무렵 원고 및 [redacted]공사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7) [redacted]공사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에 2016년 금 제2354호로 원고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E로 진행되었고, 2017. 3. 2. 위 배당절차에서 과천시가 신고한 지방세채권 54,347,340원 및 위 이행강제금 채권 10,000,000원에 관하여 지방세채권에 대하여는 54,347,340원 전액을, 이행강제금 채권에 대하여는 293,421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한편 과천시는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에 2018년 금 제3715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원고에 대한 지방세채권 등과 관련하여 1,353,74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8) 피고 [redacted]시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지방세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지방세 등 채권으로 신고한 55,211,840원에 대하여 채권 전액을, 이행강제금 등 채권으로 신고한 9,706,579원에 대하여 442,128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 과천시는 연계하여 배당된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F 배당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 [redacted]시가 이행강제금에 관한 압류권자로서 채권 원금 9,264,451원(= 1,000,000원 - 293,421원 - 442,128원)에 기하여 787,737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9) 원고는 2019. 11.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 피고 과천시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9.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redacted]시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과천시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1) 피고 [redacted]시가 55,211,840원을 배당받은 부분

가) 피고 [redacted]시가 [redacted]법원 [redacted]지원 E 및 G 배당절차사건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기재된 지방세 등 채권 55,211,840원을 전액 배당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 과천시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0원이다.

나) 한편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면, 원고의 나머지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신고한 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배당액 55,211,840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55,211,840원에 관하여는 집행법원이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표를 재조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천시가 442,128원을 배당받은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과천시장의 45,337,6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5-11

이의를 하여 관할 법원이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재판을 한 결과 이행강제금이 3,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redacted]시장이 2011. 7. 25. 검사의 집행위탁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납부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납부 통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피고 과천시가 납부받았음을 자인하는 이행강제금 2,000만 원과 앞서 본 [redacted]법원[redacted]지원 E 배당금, 같은 법원 B 배당금 외에 원고가 피고[redacted]시에게 이행강제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redacted]시의 이행강제금이 피고[redacted]시가 자인하거나 이미 배당받은 돈을 넘어 소멸하였거나 부존재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표 중 피고[redacted]시에게 442,128원을 배당한 것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